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85호 2022. 6. 30.(목)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845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
○ 사천시 조례	제1846호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사천시 조례	제1847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 ----- 5
○ 사천시 조례	제1848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사천시 조례	제1849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8
○ 사천시 조례	제1850호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 ----- 24
○ 사천시 조례	제1851호 사천시 사천비다케이블카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 사천시 조례	제1852호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 ----- 30
○ 사천시 조례	제1853호 사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34
○ 사천시 조례	제1854호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41
○ 사천시 조례	제1855호 사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49
○ 사천시 조례	제1856호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52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796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5
○ 사천시 규칙	제797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 ----- 65
○ 사천시 규칙	제798호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66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429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 68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2-136호 정동권역 창조적마을 시행계획 변경 고시 ----- 71
○ 사천시 고시	제2022-13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고시 ----- 76
○ 사천시 고시	제2022-141호 2022년도 남일대 해수욕장 종합계획 고시----- 77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2-935호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6
○ 사천시 공고	제2022-943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6

회 람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사천시 조례 제1845호

사천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30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84명” 을 “997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63명” 을 “976명”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종류별” 을 “지방공무원 종류별” 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개정 2022.6.30.>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997							
정무직 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계	966							
3급	1	1						
4급	7	4	1	2				
5급	51	26	2	6	3	1	7	6
6급 이하 소계	906							
전문경력관 소계	1							
별정직 계	-							
6급 상당	-							
연구직 계	1							
연구사	1							
지도직 계	29							
지도사	29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사천시 조례 제1846호

사천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30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사천시 자
활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및 제26조
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
로, “사용한다”를 “운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같은 조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조제10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조제11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조제1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조제1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조제1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조제1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15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단, 제8호는 제외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시금고”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로 한다.

제4조의1을 삭제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3조제6호”를 “영 제26조의4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18조의2”를 “법 제18조의6”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8조제1항 중 “제3조제2호”를 “영 제26조의4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3조의1,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사천시 조례 제1847호

사천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30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회수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잔액 및 융자금의 회수 수입 등은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사천시 조례 제1848호

사천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30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6월 30일” 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100분” 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 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제7조 중 “2021년 12월 31일” 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8조 중 “2021년 12월 31일” 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2021년” 을 “2022년” 으로, “2021년 7월” 을 “2022년 7월” 로 한다.

제8조의4 본문 중 “2021년” 을 “2022년” 으로 한다.

제8조의5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150원” 을 “250원”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0원” 을 “500원”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사천시 조례 제1849호

사천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30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2.6.30.>

(3 1)

1			
(1) 부양사실 확인	1통	300원	
2			
(1) 영업주	1통	500원	
(2) 중소기업자	1통	500원	
(3) 광업, 공업, 상업	1통	500원	
(4) 농가, 비농가	1통	500원	
3			
(1)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2) 생산실적	1통	300원	
(3) 수출실적	1통	300원	
(4) 납품실적	1통	300원	
(5) 건물사용	1통	300원	
(6) 공장원료 수요	1통	300원	
(7) 분배농지 상환완료	1통	300원	
(8) 실수요자 증명	1통	300원	
(9) 시설보유 증명	1통	300원	
(10) 식품, 환경 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	1통	300원	
4			
(1) 미분배농지	1통	300원	
(2) 공부의 등.초본 교부			
(가) 대장문서	1통	300원	
(나) 토지도면	1통	300원	
(다) 건물도면	1통	300원	

(3) 공부 및 부분열람			
(가) 기본료	1시간당	100원	
(나) 초과료	10분당	100원	
(4)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	1건	100원	
(5)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	
(6) <삭제>			
5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400원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 흑백발급	1필지	1,000원	
(나) 컬러발급	1필지	1,500원	
6			
(1)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건	800원	인터넷 신청 시 무료
7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500원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500원	
(3)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300원	
(4)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1통	300원	
(5) 보상금 지불증명	1통	300원	
(6) 면세용도 물품증명	1통	300원	
8			
(1) 철거사실 증명	1통	300원	
(2)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통	300원	
9			
(1) 수산업에 관한 증명			
(가)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	1건	800원	
(나) 어선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	1건	800원	

(2) 소방시설 완비증명	1건	500원	
(3) 그 밖에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건	300원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5)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6)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7)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	1건	800원	
(8)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	1건	800원	
.1			
(1) 행정서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2) 행정서사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3)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4) 토지등급설정심사 청구신청	1매	500원	
(5)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100원	
(6) 그 밖에 각종 인.허가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원	
2			
(1)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1건	500원	
(2) 개간허가증 교부	1건	500원	
3			
(1) 축사 표준설계 도서발급신청	1매	200원	
(2)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원	
(3) 농지보전관계 다년생식물 재배신청	1건	500원	
(4) 잠깐매매 주선업의 허가신청	1건	1,000원	
(5)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6)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7) 농어촌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원	
(8) 농어촌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원	
4			
(1)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신청	1건	500원	
(2) 어획물 양육(전적) 허가신청	1건	1,000원	
(3) 근해어업 허가신청	1건	4,500원	
(4)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해조류·패류·어류등·복합·협동·외해)면허 신청	1건	5,000원	
(5)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 허가신청	1건	3,000원	
(6)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대표자선정·변경·지분변경) 또는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1건	1,000원	
(7) 어업권(지분) 또는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1건	4,000원	
(8)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분할 인가신청	1건	2,500원	
(9)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변경 인가신청	1건	3,000원	
(10) 면허사항 변경신고 (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1건	1,000원	
(11) 관리선 사용의 지정·어선 사용승인 및 (양식)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 신청	1건	1,000원	
(12)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및 (양식)관리선 사용지정(승인)사항 변경신청	1건	1,000원	
(13) 연안어업 허가신청	1건	2,500원	
(14) 구획어업 허가신청	1건	4,500원	
(15) 한시어업허가(허가연장) 신청	1건	2,000원	
(16) 시험어업 또는 시험양식업 신청	1건	2,000원	
(17) 어구·시설물 또는 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 신청	1건	3,000원	
(18)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원	

(19) 내수면어업 허가(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1건	5,000원	
(20) 내수면어업 면허(정치망어업)	1건	9,000원	
(21) 내수면어업 면허(공동어업)	1건	7,500원	
(22)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원	
(23)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1건	5,000원	
(24)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500원	
(25) 어업허가사항 또는 양식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원	
(26) 어업허가사항 또는 양식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1,500원	
(27) 어업신고	1건	1,500원	
(28)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29) <삭제>			
(30) 면허(양식면허)신청 기간의 연장신청	1건	1,000원	
(31)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또는 양식업면허증, 양식업허가증, 관리선사용지정(승인)증 재발급	1건	1,000원	
(32) <삭제>			
(33)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포기 신고	1건	1,000원	
(34) 허가·신고어업 또는 양식업 폐업 신고	1건	800원	
(35) 허가어업 휴업(재개) 신고	1건	1,000원	
(36) <삭제>			
(37)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1건	4,500원	
(38)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1건	2,000원	
(39) 입어 재결신청	1건	3,000원	
(40)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1건	3,000원	
(41) <삭제>			
(42)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	1건	3,000원	
(43) 어업권(지분)이전·변경등록	1건	1,500원	
(44) <삭제>			

(45) <삭제>			
(46)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47) <삭제>			
(48)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원	
(49) 어획물운반업 등록	1건	5,000원	
(50) 어획물운반업 변경	1건	2,000원	
(51)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 및 육상 등 내수양식업) 허가 신청	1건	4,000원	
(52) <삭제>			
(53) <삭제>			
(54)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변경허가)신청	1건	2,000원	
(55) 어선건조·개조발주 허가(변경허가)신청	1건	1,000원	
(56)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3,000원	
(57)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1건	1,000원	
(58)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1건	4,000원	
(59) <삭제>			
(60) 낚시터업(허가, 등록) 신청	1건	2,500원	
(61) 낚시터업 변경(허가, 등록)신청	1건	1,500원	
(62)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	1건	1,500원	
(63) 관상어양식업 신고	1건	1,000원	
(64)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1건	9,000원	
5			
(1)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	1건	1,000원	
(2)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1건	1,000원	
(3)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원	
(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원	

(5)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	1건	20,000원	
(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 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30,000원	
(7)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 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원	
(8)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 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10,000원	
(9)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 판매업) 신고	1건	10,000원	
(1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 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원	
(11)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1건	1,500원	
(1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1건	1,500원	
(1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1건	1,500원	
(1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	1,500원	
(15)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500원	
(16)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1건	1,000원	<증명> 3.(8)에서 이기
(17) 공장등록대장등본 발급	1건	1,000원	
6			
(1)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허 가	1건	허가사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금 제외
(2)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시행허가	1건	허가사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금 제외
(3) 토석, 사력 등 공유수면 및 소하천 산출물의 채 취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4) 그 밖에 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 허가(식물의 재식 및 농업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1건	점용료의 1/1,000	
(5)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점용(물량증가) 명의변 경허가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6)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허가사항 변경 신고	1건	500원	

(7)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허가	1건	1,000원
(8)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원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도선장설치 허가신청	1건	1,000원
(13)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9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0인 이하의 배	척당	1,3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원
(14)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1,000원
(15) 옹벽 및 공작물 등 출조허가 신청	1건	1,000원
(16) 건축사 신상 변동사항 신고	1건	500원
(17) 공영주택 양수.양도 및 승인신청	1건	500원
(18)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500원
(19)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20)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건	500원
(21)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원
(22)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500원
(23) 체비지소유자 확인서	1건	500원
(24)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00원
7		
(1) 분뇨종말처리시설 액상 폐기물 정화조 설계시공(청소)업자 등록증 교부신청	1건	500원
(2) 유료직업 소개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신청	1건	1,000원

(3) 의례식장 등 명칭변경신고	1건	500원	
(4) 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	1건	500원	
(5)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500원	
(6) 묘지개장 허가신청	1건	500원	
(7)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1건	500원	
(8)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			
(가) 종합병원	1건	100,000원	
(나) 일반병원	1건	100,000원	
(9) 개설허가사항 변경(부속의료기관 포함)			
(가) 종합병원(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	1건	40,000원	
(나) 일반병원(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	1건	40,000원	
(10)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마시술소, 조산소)개설신고 사항(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40,000원	
(11)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마시술소, 조산소)개설신고 사항 변경 신고(부속의료기관 포함)(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	1건	20,000원	
(12) 치과 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13) 치과 기공소 인정사항	1건	5,000원	
(14)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	10,000원	
(15)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16)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	10,000원	
(17) 인.허가 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18) 휴.폐업 확인 신청	1건	500원	
(19) 위생처리업 신고	1건	30,000원	
(20) 세척제제조업 신고	1건	15,000원	
(21)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건	30,000원	
(22) 장난감 제조업 신고	1건	10,000원	
(23)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4)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5)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1건	15,000원	
(26) 장난감제조업 변경신고	1건	5,000원	
(27)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1건	5,500원	
(28)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	3,000원	
8			
(1)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원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3)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5)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6) 게임제작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7)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8) 게임배급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9)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건	20,000원	
(10) 일반 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신청	1건	5,000원	
(11)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2) 청소년 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3)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4)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1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	1건	5,000원	
(19)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20)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1)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원	
(22)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	

(23)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24)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26)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2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원	
(29)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30)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3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2)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원	
(34)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1건	60,000원	
(35)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1건	30,000원	
(36)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1건	50,000원	
(37)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원	
(38) 유원시설업(종합.일반유원시설업 제외) 신고	1건	30,000원	
(39) 유원시설업(종합.일반유원시설업 제외) 변경신고	1건	15,000원	
(40)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41) 애니메이션업 신고	1건	20,000원	
(42)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43)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1건	5,000원	
9			
(1)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공서 교부수수료			
(가) 신규	1건	4,000원	
(나) 갱신	1건	2,000원	

(2)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 금액 100분의1로 한다.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3)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4)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5)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0			
(1)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1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3) <삭제>			
2			
(1)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신청			
(가) 법인	1건	30,000원	
(나) 개인	1건	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3)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원	
(4)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원	
(5) 부동산중개업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	800원	

【별표 6】 <개정 2022.6.30.>

(3 6)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 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 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교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사천시 조례 제1850호

사천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30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사천시 조례 제1851호

사천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30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케이블카 왕복”을 “케이블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최초 탑승지인 대방정류장”을 “대방정류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유지인 각산”을 “각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차방법과 운행구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제11조제3호 중 “아동(단, 보호자 1명당 아동 1명 이용료 면제가능, 초과아동인원에 대하여는 소인요금 적용)” 을 “아동”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용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케이블카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잔여 구간에 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1호 중 “정신질환이나 감염성질환” 을 “감염성질환” 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0

(3)

		1	2	
왕 복	대방정류장	초양정류장	각산정류장	대방정류장
편 도	각산정류장	-		대방정류장
편 도	대방정류장	-		초양정류장

※ 대방→초양구간은 아라마루아쿠아리움 통합권에 한해서 운행한다.

[2 < 0

(0)

		()		()		
일반 캐빈	대인	15,000	13,000	9,000	7,000	1명 요금
	소인	12,000	10,000	6,000	4,000	1명 요금
크리스탈 캐빈	대인	20,000	18,000	12,000	10,000	1명 요금
	소인	17,000	15,000	9,000	7,000	1명 요금

- ※ 1. 단체는 20명 이상을 말한다.
 2. 대인은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소인은 만 3세(36개월)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3. 왕복권을 발권하여 편도구간만 이용하더라도 잔여구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음.
 4.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미만 아동의 이용료는 면제함.
 5. 아라마루아쿠아리움 등 타 시설과의 연계관광 통합권 이용료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사천시민,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대인	10,000원	15,000원	1명 요금
	소인	7,000원	12,000원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장애인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3,000원	18,000원	1명 요금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대인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소인	9,000원	14,000원	1명 요금

- ※ 1. 이용료 할인은 왕복 요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2. 사천시민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 3.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4. 장애인은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 5. 국가보훈대상자란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6. 이용료 할인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 7.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8. 연계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이용료의 할인율은 30% 이내로 한다.
- 9.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현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 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사천시 조례 제1852호

사천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30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규정에 따라”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중 “ “폐수관거”란”을 “ “폐수관로”란”으로, “관거 및”을 “관로 및 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폐수관거”를 “폐수관로”로, “관거 및”을 “관로 및 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비용(시설개선충당금 포함한다)”을 “비용으로 유지관리비와 시설개선충당금으로 구분된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폐수관거 종말지점”을 “배수설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폐수관거의 이용가능여부”를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로, “승인하며”를 “승인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51조제2항”을 “법 제51조제3항”으로,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을”을 “시행규칙 제72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폐수관거”를 “폐수관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설치완료 후”를 “설치완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계산업무상”을 “산출업무상”으로 한다.

제10조 중 “법 제32조제8항”을 “법 제32조제9항”으로, “[별표 13]”을 “별표 13”으로, “준수하도록 처리하여야”를 “준수하여 처리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 한다”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면”을 “감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축물의 주용도가 단독주택인 경우 사용료는 「사천시 하수도 사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용조례」 제10조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따른다.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폐수관거” 를 “폐수관로” 로 한다.

제23조 중 “자에 대하여는 폐수관거” 를 “자(사용료 3개월 이상 체납자 포함)에 대해서는 폐수관로”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2.6.30.>

사용료의 산출기준(제11조제1항 관련)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AS = \{aM(Ki/Kt) + bM(Qi/Qt)\} + e$$

1. a, b는 상수(a+b=1, a=0.2, b=0.8)
2. AS : 원인자별 사용료(월간)
3. M : 월간 유지관리비(직접경비 + 간접경비)
 - 가. 직접경비 :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 나. 간접경비 : 직접경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자가 재정상황을 고려해 10%범위 내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4. Kt : 전체 입주업소 부지면적(m²)
5. Ki : 개별업소 부지면적(m²)
6. Qt : 총 오·폐수 배출 오염부하량
 - 가. 폐수 : $\frac{[(BOD + COD)/2] + SS}{\text{유량}}$
 - 나. 오수 : (BOD + SS) × 유량
7. Qi : 개별업소 오·폐수 배출 오염부하량
 - 가. 폐수 : $\frac{[(BOD + COD)/2] + SS}{\text{유량}}$
 - 나. 오수 : (BOD + SS) × 유량
폐수의 유량 및 농도는 실측자료를 적용하고, 오수의 오염부하량 산정은 처리시설 실시설계보고서 자료를 적용한다.
8. e : 업소별 월간 시설개선충당금
 $e = E[0.7(Ki/Kt) + 0.3(Qi/Qt)]$
 - 가. E : 월간 시설개선충당금
시설개선충당금: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 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 적립금율을 곱하여 산출
 - (1) $E = E_j \times F_i$
 - (2) E_j : 처리시설 준공시점의 재산가액을 기초자료로 산정한다. 단, 토지가액은 제외
 - (3) F_i : 처리시설 시설개선충당금 적립율

※ 공동처리구역내 입주가동율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요율을 정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사천시 조례 제1853호

사천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30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사천시장은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신설 2022.6.30.>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산정방식(단위 : 연간)
<p>1.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호안(기슭·둑 침식 방지 시설)·소형선 부두(야적장을 포함한다)·방파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p> <p>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 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p> <p>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p>
<p>2. 조선용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艀裝岸壁),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p>	<p>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p>
<p>3.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사용</p>	<p>가. 전기사업용수 m³/초당 연액 20만원</p> <p>나. 가목 이외 용수</p> <p>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p> <p>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p> <p>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p> <p>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p> <p>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p> <p>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p> <p>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p>

	<p>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m³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p> <p>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 $\frac{\text{관의 지름}^2 \times \text{관내유속(m/sec)}}{146^2 \times 60}$</p>
<p>4.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p>	<p>가. 해당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조정하여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p>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전년도 10월 중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가격(조사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수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한 가격을 말한다)으로서 채취된 골재가 인근의 특별자치시·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군·구에서 판매된 도매가격 평균치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곱한 값</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p>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p> <p>다.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p>
5.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
6.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
7. 「광업법」 및 「해저 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적용한다.
8. 준설토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점용·사용(「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m ³)당 100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	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점용·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비 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시·군·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시·군·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사천시장이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사천시 조례 제1854호

사천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30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례”를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통합지원본부가 현장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오지 마을과
도서 낙도에”를 “통합지원본부장의 임명을 받아”로, “자를 통합지원본
부의 장이 임명하고 현장대응팀장의 지휘를 받는 재난지역 소속 읍·면·
동·출장소장을 말한다”를 “재난지역 관할 읍·면·동·출장소장을 말한
다”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책본부장”을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방조제등”을 “방조제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좌초등”을 “좌초 등”으로, “예상 되거나”를 “예상되거나”로 한다.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의 확산

제7조의 제목 “(통합지원본부 실무팀편성 및 임무)”를 “(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지원본부의 장”을 “통합지원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연락관 파견)”을 “(업무연락관 파견)”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락관”을 “업무연락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지정)”을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임명)”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난이 현장대응팀장의 신속한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발생한 경우에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지역 관할 읍·면·동·출장소장을 재난현장의 초기대응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팀장의 지휘에 협력해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통신망 연락관”을 “통신망, 업무연락관”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을 “(현장응급의료소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지원)”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현장응급의료소” 를 “의료소”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현장응급의료소장” 을 “의료소의 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 을 “제4항” 으로, “응급의료기관” 을 “응급의료기관의 장” 으로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 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재난관리책임기관” 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족한 자원 지원요청이 있을시” 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요청받은 경우”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 을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제3항”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에”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인력 및 자원에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과 자원·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자의 성별·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의 제목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을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37조제1항6호”를 “법 제37조”로, “긴급구조통제 단장”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등을”을 “등의”로, “요청 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청받은 긴급구조통제 단장”을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통합지원본부의 장”을 “통합지원본부장”으로 한다.

제25조 중 “경우,”를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의 권한을 위임하고”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 을 “대책본부장” 으로,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한다” 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22.6.30.>

통합지원본부 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통합지원본부장 (부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원본부장으로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 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등
공보관 (공보감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등
연락관 (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등
상황총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등
현장대응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방역(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등
자원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통신 지원 • 현장대응 자원 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관리(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등
대민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임시주거시설 지원 • 이재민 구호, 심리 지원 • 장례지원 등

[별표 3] <개정 2022.6.30.>

재난유형 및 사고수습 주관부서 (제7조 및 제9조 관련)

교육부	1.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평생학습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4.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재난안전과
외교부	1.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재난안전과
국방부	1.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과
행정안전부	1. 공공청사 2.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한파·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회계과 도로과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
문화체육관광부	1.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체육과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	농축산과 건설과
산업통상자원부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4. 전력 사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보건복지부	1. 보건의료 사고	치매관리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1. 감염병 재난	보건위생과

환경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6. 미세먼지 	환경보호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고용노동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재난안전과
국토교통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터널 사고 2. 육상화물운송 사고 3. 항공기 사고 4.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5.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도로과 민원교통과 민원교통과 민원교통과 건축과
해양수산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금융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지역경제과
원자력안전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접지역 방사능 누출 사고 	환경보호과
소방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재·위험물 사고 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재난안전과 시설관련부서
문화재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체육과
산림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불 2. 산사태 	녹지공원과 녹지공원과
해양경찰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해양수산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사천시 조례 제1855호

사천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30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민의 안전 증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2. “이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동보조기기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이용 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
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설치
5. 그 밖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제6조(보험) 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을 위하여 전동보조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사천시 조례 제1856호

사천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30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위기상황으로부터 사천시민의 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재난위기 극복을 위하여 사천시민에게 지원하는 현금, 현물, 선불카드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6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①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사용기한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 등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상남도가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였거나, 지원 예정인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만 지원하거나 미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경우에는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주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사천시 규칙 제796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30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개정 2022.6.30.>

(2)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총합계		9	8	2	4	8	2	8	0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8	8	2	8	8	2	8	0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7	4	1	2					
	행정	1	1							
	기술	1			1					
	행정+기술	4	3	1						
	행정+기술+농촌지도관	1			1					
5급	소계	51	26	2	6	3	1	7	6	
	행정	7	5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시설	11	10	1						
	행정+방송통신	1	1							
	농업+농촌지도관	2			2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5급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1							1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2						2		
	행정+농업+보건+시설		1						1		
	행정+농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3			3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6급	소계		249	157	3	26	13	6	30	14	
	행정		52	47	2		3				
	세무		2	2							
	사회복지		1	1							
	공업		1				1				
	농업		3			3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진료		2			2					
	환경		1	1							
	시설		15	14			1				
	행정+세무		13	9					1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9	11			1	1	2	4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5	1		1		2	1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6급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3			3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28	27	1						
	농업+농촌지도사	1			1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간호	5			5					
	행정+세무+사회복지	4					1	2	1	
	행정+세무+농업	2						2		
	행정+세무+시설	2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4	4							
	행정+사회복지+공업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5	2					3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1	
	행정+공업+녹지	1	1							
	행정+공업+환경	4	2			2				
	행정+공업+시설	9	9							
	행정+농업+녹지	6	3					3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농업+시설	7	3					4		
	행정+수의+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6급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위생		2				2				
	행정+운전+방호		1	1							
	공업+시설+환경		1				1				
	공업+시설+방송통신		1	1							
	농업+수의+환경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행정+세무+농업+보건		1				1				
	행정+세무+농업+환경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3					1	2		
	행정+전산+사회복지+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보건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2			2					
	행정+공업+농업+해양수산		1					1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행정+공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7급	소계		275	154	11	39	16	6	28	21	
	행정		80	48	9		5	1	12	5	
	세무		6	5						1	
	사회복지		18	2				1	9	6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7급	공업	1			1					
	농업	2			2					
	녹지	3	3							
	수의	2			2					
	해양수산	3	3							
	보건	4			4					
	의료기술	2			2					
	간호	4			4					
	보건진료	7			7					
	환경	2	2							
	시설	21	18			2	1			
	방재안전	1	1							
	운전	3		1		2				
	행정+세무	11	7					1	3	
	행정+전산	5	4			1				
	행정+사회복지	10	6				2		2	
	행정+농업	6	1		2		1	1	1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24	22					1	1	
	행정+방재안전	1	1							
	공업+시설	2				2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2			2					
	농업+녹지	1			1					
	시설+방재안전	2	2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7급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5	4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환경	6	3			3				
	행정+공업+시설	5	5							
	행정+농업+녹지	4	3				1			
	행정+농업+시설	4	3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보건+간호	1			1					
	농업+수의+환경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6			6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8급	소계	230	110	3	34	9	10	31	33	
	행정	54	25			1	5	9	14	
	세무	2	2							
	사회복지	10	4				2	2	2	
	속기	1		1						
	공업	2	1			1				
	농업	2			2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	1			1					
	의료기술	2			2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8급	간호	20			6		1	7	6	
	보건진료	4			4					
	시설	18	14			1		3		
	운전	5	4	1						
	전기운영	2	2							
	행정+세무	10	5					2	3	
	행정+전산	2	2							
	행정+사회복지	16	10			1	1	1	3	
	행정+사서	1				1				
	행정+농업	5	1					2	2	
	행정+해양수산	3	3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18	15			1		1	1	
	행정+방재안전	1	1							
	농업+녹지	1			1					
	보건+간호	8			8					
	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2	1	1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환경	5	4			1				
	행정+공업+시설	3	3							
	행정+농업+녹지	6	2				1	2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8급	행정+보건+간호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1	1							
	보건+공업+환경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5			5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9급	소계	152	68(3)	1	10	13(1)	4	29	27	
	행정	35	10(3)			3(1)	1	11	10	
	세무	3	3							
	사회복지	12	3				1	1	7	
	사서	2				2				
	속기	1		1						
	방호	3	1				1	1		
	공업	2	1			1				
	농업	1			1					
	보건	2			2					
	환경	1	1							
	시설	12	9			2		1		
	운전	4	1		1	2				
	전기운영	1	1							
	사무운영	1						1		
	행정+세무	4	1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27	10					10	7	
	행정+농업	7			2		1	1	3	
	행정+녹지	3	3							
	행정+해양수산	1	1							

직급·직렬별		기관별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총합계	본청							
9급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7	7							
	행정+방재안전	3	3							
	공업+시설	2	2							
	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행정+공업+환경	4	1			3				
	행정+공업+시설	5	5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행정+공업+녹지+시설	1	1							
전문 경력관	소계	1			1					
나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1			1					
지도직 합계		29			29					
지도사	농촌지도사	29			29					
연구직 합계		1	1							
연구사	기록연구사	1	1							
별정직 합계		-	-							
별정6급 상당	비서	-	-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사천시 규칙 제797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30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사천시 규칙 제798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30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사천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33조에 따라”를 “제3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별지 제18호서식의 무료지급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를 “조례 제33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는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제공한다” 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무료지급조서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사천시 훈령 제429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6월 30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개정 2022.6.30.>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 총괄

부서별 직급별	합계	일 반 직									전문 경력관	별정직	정무직	지도직	연구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997	966	1	7	51	249	275	230	152	1		1	29	1	
기획예산담당관	18	18			1	8	7	1	1						
공보감사담당관	15	15			1	7	5	2							
혁신법무담당관	13	13			1	5	4	3							
행 정 과	28	26	1	1	1	10	7	3	3			1		1	
주민생활지원과	23	23			1	7	4	6	5						
노인장애인과	19	19			1	6	3	4	5						
여 성 가 족 과	21	21			1	5	6	4	5						
세 무 과	31	31			1	8	11	7	4						
회 계 과	22	22			1	6	5	9	1						
문 화 체 육 과	19	19		1	1	5	6	3	3						
관 광 진 흥 과	17	17			1	6	5	2	3						
환 경 보 호 과	16	16			1	5	5	3	2						
해 양 수 산 과	23	23			1	7	7	7	1						
민 원 교 통 과	24	24			1	6	8	7	2						
정 보 통 신 과	15	15			1	5	4	3	2						
재 난 안 전 과	25	25		1	1	9	6	4	4						
도 시 과	17	17			1	5	6	4	1						
건 축 과	24	24			1	6	6	7	4						
건 설 과	17	17			1	5	5	4	2						
도 로 과	20	20			1	5	7	5	2						
도 시 재 생 과	17	17			1	5	6	5							
우 주 항 공 과	17	17		1	1	6	6	1	2						
산 업 입 지 과	18	18			1	4	8	3	2						

부서별 직급별	합계	일 반 직									전문 경력관	별정직	정무직	지도직	연구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 역 경 제 과	17	17			1	4	3	6	3						
녹 지 공 원 과	23	23			1	6	8	3	5						
토 지 관 리 과	21	21			1	5	5	4	6						
의 회 사 무 국	21	21		1	2	3	11	3	1						
보 건 소	91	91		1	3	19	30	31	7						
농업기술센터	56	27		1	3	7	9	3	3	1			29		
평생학습센터	15	15			1	4	4	2	4						
환 경 사 업 소	17	17			1	4	5	2	5						
상하수도사업소	22	22			1	5	7	5	4						
신 수 출 장 소	2	2				1	1								
사 천 읍	27	27			1	6	6	10	4						
정 동 면	19	19			1	4	4	4	6						
사 남 면	20	20			1	5	6	5	3						
용 현 면	19	19			1	5	3	6	4						
축 동 면	16	16			1	4	3	5	3						
곤 양 면	17	17			1	4	4	4	4						
곤 명 면	17	17			1	4	4	4	4						
서 포 면	17	17			1	4	4	3	5						
동 서 동	18	18			1	3	3	6	5						
선 구 동	16	16			1	2	3	5	5						
동 서 금 동	15	15			1	2	3	4	5						
별 용 동	20	20			1	3	6	6	4						
향 촌 동	16	16			1	2	3	7	3						
남 양 동	16	16			1	2	3	5	5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사천시 고시 제2022-136호

정동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21-369호(2021.12.16.)호로 시행계획변경 고시된 「정동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의 시행계획 내용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6월 30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정동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2.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의 종합적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사업비 : 3,286백만원
4. 주요 사업내용
가. 주요사업내용(당초)

(단위 : 백만원)

사업분야	세 부 사 업	사 업 개 요	사업비	비고
	합 계		3,286	
기초생활기반확충			1,888	
	정동권역 문화복지공간 조성	센터 신축 116.64㎡, 다목적체육공간 신축 199.82㎡	1,888	
지역경관개선			637	
	수청마을 숲 정비	주차장정비, 마을쉼터 신설	263	
	예수마을 쉼터 조성	사업삭제	0	
	예수마을 둘레길 조성	둘레길조성 420m	362	
	권역 안내판	1식	12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지역역량강화		215
교육 및 견학	1식	39
홍보마케팅	1식	29
컨설팅	1식	18
정보화구축 및 운영지원	1식	20
마을경영지원	1식	109
부대비용	설계비, 감리비 등	546

나. 주요사업내용(변경)

(단위 : 백만원)

사업 분야	세 부 사 업	사 업 개 요	사업비	비고
합 계			3,286	
기초생활기반확충			2,093	
	정동권역 문화복지공간 조성	센터 신축 116.64㎡, 다목적체육공간 신축 199.82㎡	2,093	- 포장면적 변경 - 흡음재 등 반영
지역경관개선			426	
	수청마을 숲 정비	사업삭제	49	- 타사업 편입에 따른 사업삭제
	예수마을 쉼터 조성	사업삭제	0	- 사업삭제
	예수마을 둘레길 조성	둘레길조성 420m	374	- 울타리 및 매트 수량 변경
	권역 안내판	1식	3	- 수량 및 규격 감소
지역역량강화			214	
	교육 및 견학	1식	39	
	홍보마케팅	1식	29	
	컨설팅	1식	18	
	정보화구축 및 운영지원	1식	20	
	마을경영지원	1식	109	
부대비용	설계비, 감리비 등		553	- 대상액 변경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도시재생과장)

6.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사천지사장)

7. 사업시행기간

■ 2015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가. 토지조서(당초)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면	리			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합 계					5,223							
1) 정동권역 문화 복지공간 조성					2,439							
1	정동	대곡	668-3	답	852	852	최*경	부산시 동래구 운천동 ***_**				센터
2	〃	〃	668-11	답	374	374	〃					〃
3	〃	〃	668-12	답	121	121	〃					〃
4	〃	〃	655-2	답	151	151	사천시					체육 공간
5	〃	〃	656-2	답	941	941	사천시					〃
2) 수청마을 숲 정비					1,699							
1	정동	수청	112-1	천	2978.0	37	경상남도					
2	〃	〃	137-2	도	483.0	47	농림축산 식품부					
3	〃	〃	139	답	457.0	457	사천시					
4	〃	〃	139-1	답	861.0	861	이*임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_*				
5	〃	〃	139-2	도	181.0	148	사천시					
6	〃	〃	139-3	도	83.0	81	사천시					
7	〃	〃	139-4	답	40.0	37	경상남도					
8	〃	〃	139-5	답	31.0	4	경상남도					
9	〃	〃	258	천	70,539.0	27	국토 교통부					
3) 예수마을 둘레길 조성					1,085							
1	정동	예수	754	구	6959	370	농림 축산 식품부					
2	〃	〃	180-3	답	1,573	327	진*임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				
3	〃	〃	180-4	답	142	142	영화*** ***	진주시 상봉동 ***				
4	〃	〃	181-6	대	443	57	이*수	사천시 정동면 옥산로 ***, ***동***호	정동 농업 협동 조합			
5	〃	〃	181-8	답	152	152	〃	〃	〃			
6	〃	〃	180-9	도	37	37	진*임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가. 토지조서(변경)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면	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합 계					3,981							
1) 정동권역 문화 복지공간 조성					2,439							
1	정동	대곡	668-3	답	852	852	사천시					센터
2	〃	〃	668-11	답	374	374	사천시					〃
3	〃	〃	668-12	답	121	121	사천시					〃
4	〃	〃	655-2	답	151	151	사천시					체육 공간
5	〃	〃	656-2	답	941	941	사천시					〃
2) 수청마을 숲 정비					457							
1	정동	수청	112-1	천	2978.0	37	경상남도					
2	〃	〃	137-2	도	483.0	47	농림축산 식품부					
3	〃	〃	139	답	457.0	457	사천시					
4	〃	〃	139-1	답	861.0	861	이*임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_*				
5	〃	〃	139-2	도	181.0	148	사천시					
6	〃	〃	139-3	도	83.0	81	사천시					
7	〃	〃	139-4	답	40.0	37	경상남도					
8	〃	〃	139-5	답	31.0	4	경상남도					
9	〃	〃	258	천	70,539.0	27	국토 교통부					
3) 예수마을 둘레길 조성					1,085							
1	정동	예수	754	구	6,959	370	농림 축산 식품부					
2	〃	〃	180-3	답	1,573	327	사천시					
3	〃	〃	180-4	답	142	142	사천시					
4	〃	〃	181-6	대	443	57	사천시					
5	〃	〃	181-8	답	152	152	사천시					
6	〃	〃	180-9	도	37	37	사천시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나.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정동면 대곡리	656-2	업무 및 창고시설	조립식	320㎡	사천시					

9.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도시재생과(055-831-3240),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농어촌사업부(055-851-814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사천시 고시 제2022-137호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감면 고시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감면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 6. 30.

사 천 시 장

1. 감면대상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고 사천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점용 및 사용하는 자
2. 감면기간
정기분: 2022. 6. 1. ~ 2023. 5. 31.(1년간)
수시분: 2022년 부과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간
※ 허가기간 1년 미만일 시 허가기간 내에서 감면
3. 감면규모
2022년 부과되는 연간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25% 일괄 감면(별도 신청 불요)
4. 감면사유 :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공유수면 점·사용 피허가자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을 추진코자 함.
5. 근거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사천시 고시 제2022-141호

「2022년도 남일대 해수욕장 종합 운영계획」 고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2022년도 남일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관리 및 방역관리 계획을 포함한 「2022년도 남일대 해수욕장 종합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30.

사 천 시 장

1. 근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관리계획의 수립)
2. 해수욕장 운영 중점사항
 - 인명사고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3. 운영계획 주요내용
 - 개장기간: 2021. 7. 8.(금) ~ 8. 21.(일)<45일간>
 - 개장시간(수영가능시간): 10:00 ~ 18:00
 -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유영구역 내 애완동물 입수금지에 관한 사항

2022년도 남일대 해수욕장 종합 운영계획

❖ 2

I 관련 근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관리계획의 수립)
 - 관리청은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II 해수욕장 기본현황

□ 일반현황

- 지정 해수욕장: 1개소 / 남일대해수욕장
- 위치: 사천시 남일대길 60(향촌동) 외 4필지
- 면적: 66,000㎡(백사장 면적 7,800㎡)

□ 시설 및 장비현황

									()			
			(/)	(/)							()	()
	1	2	1	1	2	1	1	1	2	1	2	2
												2

민간운영 편의시설 현황

			()			()		
1	1	0	1	3	5	1	1	

개장기간 방문객수(최근 3개년)

	0	0	0
	7 6 ~ 8 8 ()	7 0 ~ 8 2 ()	7 9 ~ 8 2 ()
	0	0	0

※ 이용인원은 개장기간 중 09:00 ~ 18:00 사이 집계한 기준임.(야간 제외)

최근 5년간 안전사고 발생현황: 없음

III 운영계획

2022년 남일대 해수욕장 개장

- 개장기간: 2022. 7. 8.(금) ~ 8. 21.(일)/〈45일간〉
- 개장시간: 10:00 ~ 18:00
- 남일대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운영
 - 운영기간: 2022. 7. 8. ~ 8. 21.
 - 운영시간: 09:00 ~ 18:00
 - 근무인원: 약 53명 ※ 해경은 ‘해상순찰형’ 지원근무
 - 해양수산과(2), 민간안전관리요원(8), 공공근로(8), 119수상구조대(3~5), 대학생아르바이트(30)
- 남일대해수욕장 트롯가요제 개최
 - 운영기간: 2022.08.05.(금)~08.06.(토), 19:30~
 - 무대설치 및 평탄화 작업은 7월 말 시작예정. ※ 우천 등 기상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IV 안전관리 계획

□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반영 위험구역 설정 · 게시

- 근거법령: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 위험성평가 시행결과
 - 일시/장소: 2022. 6. 8.(수) 14:00 / 남일대해수욕장 행정봉사실
 - 참석기관: 사천해경, 사천경찰서, 육군 제8962부대 등
 - 주요 지적사항
 - 해수욕장 내 드론비행 금지에 관한 사항 홍보
 - 위험구역 표지 시설물 추가 설치(스카이워크 및 코끼리바위 산책로 인근)
- 위험성평가 지적사항 반영계획
 - 드론비행 금지 관련 현수막 설치 및 안내 방송 송출
 - 위험구역 안내 표지판 추가 설치(해수욕장 안전관리사업)

□ 유영구역 설정 · 게시(수영한계선)

- 유영구역: L=170m, B=90m ※ 수심: 만조 시 2.5 ~ 3m
 - 설치방법
 - 2중 로프 설치(L=170m, B=90m), 레저구간과의 경계 안전구간 확보
 - 소형부표 63개, 오투기 부이 9개 설치
- ※ 개장기간 중 유영구역 내 애완동물 입수 금지(해수욕장 협의회 의결)

□ 안전시설 및 장비 확충계획

- 근거법령: 「해수욕장법 시행령」 제7조(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 ※ 최근 3년간 이용객 수가 5만명 미만인 해수욕장
 - ⇒ 구명보트 또는 수상오토바이가 1대 이상일 것

○ 사천시 남일대해수욕장 3년 평균 이용객 수: 37,245명(5만명 이하)

	0	0	0	
	7 6 ~ 8 8 ()	7 0 ~ 8 2 ()	7 9 ~ 8 2 ()	
	2	3	8	

○ 안전시설 보유현황(수영한계선 및 해파리차단망은 개장 전 설치)

	2	-	3	3	2	1	-	1	-	:1 :1

○ 안전시설·장비 확충계획

		()	()	()
	8		2	
			3	6)
			3	6)
			2	4)
			3	6)
			3	6)
			2	4)
			3	6)
			2	4)

□ 민간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운영

○ 안전관리자 지정현황

1		6		1
2		8		

: 6 ()

○ 안전관리요원 모집·운영계획

- 모집기간: 2022. 6. 14. ~ 6. 16.
- 근무기간: 2022. 7. 1. ~ 8. 28.
- 인력규모: 8명 ※ 안전관리요원(인명구조 자격증 보유)
- 근무내용
 -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순찰, 익수자 발견 시 인명구조 등
 - 응급환자 응급처치, 유영구역 안내 및 기타 질서사항 준수 지도 등

○ 안전관리요원(보조요원 포함) 근무 위치

- 감시탑 경계 업무: 1명
- 수상오토바이 운용: 1명
- 해안변 통제구역: 2명
- 백사장 및 유영구역 상황유지: 4명

※ 안전관리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모집 결과 및 해수욕장 운영 여건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

○ 행정봉사실 운영계획

- 운영기간/운영시간: 개장기간 중 / 09:00~18:00
- 운영기능: 해수욕장 안전관리 전반, 질서유지, 민원해결 등
- 근무인원: 2명(해양수산과)
- 근무방법: 근무명령(성수기 등 여건에 따라 근무인원 탄력운영)

○ 관계기관별 협조사항(실무자 회의 및 협의회 결과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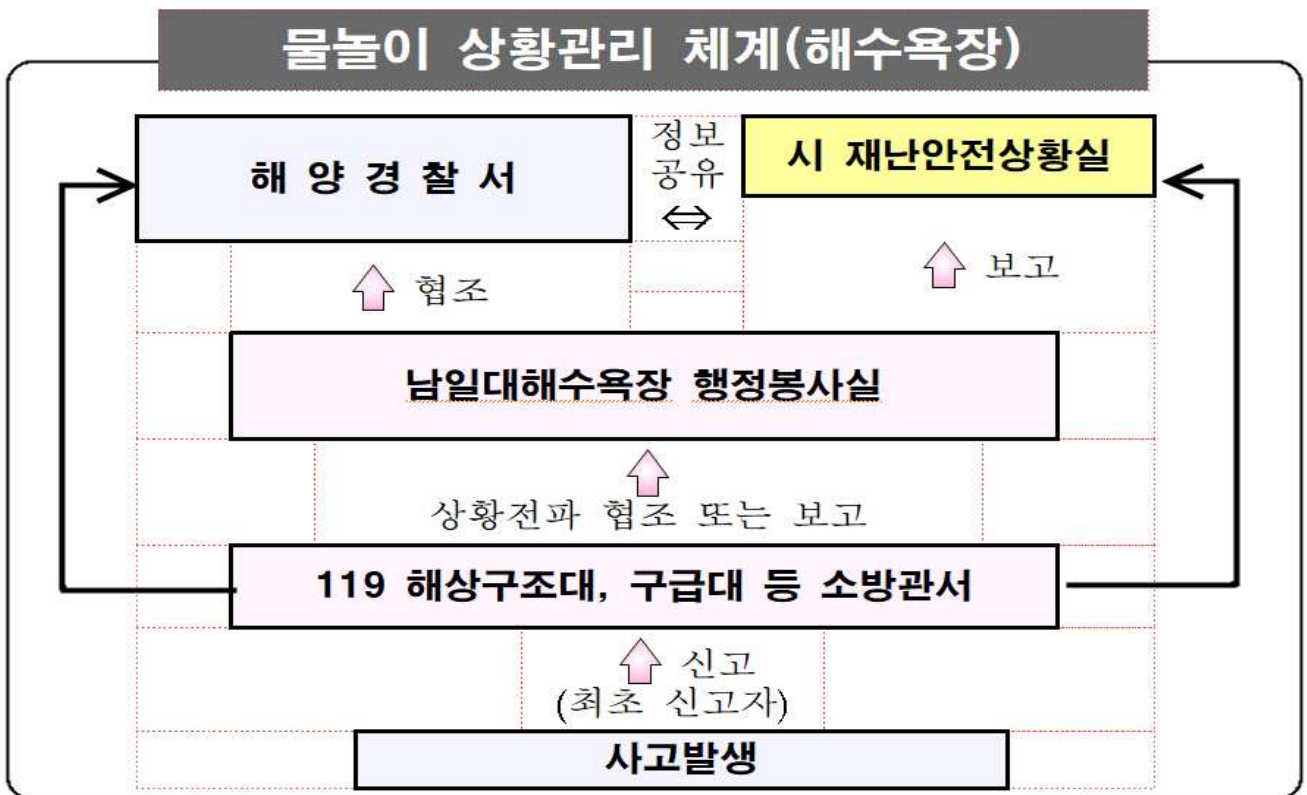
()				
		7)	: 5 , : 2 (2 5 9 8)	
	()	3 ~ 5 ()	9 ()	: 5 : 3
	()		(,)	

○ 안전관리 관계기관(부서) 비상연락망 구축

()	()	()		
	()	()	☎	
	()	()	☎	
	()	()	☎	
			☎	
	()	()	☎	
	()	()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책임자 휴대전화번호는 기관별 별도 배부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 및 보고체계



V**행정사항**

2022년도 남일대해수욕장 종합 운영계획 고시 및 공고: 6. 27.

안전관리요원 근로계약 체결: 6. 28.

백사장 정비 및 개장준비 완료: 7월 초

안전관리요원 개장 전 조기근무 시작: 7. 1.

해수욕장 개장: 7. 8. 끝.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사천시 공고 제2022-935호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6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922, FAX : 831-6028)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회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6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6. . ~ 2022. 7.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불용품폐기(해체)조서”로, “폐기 하여야”를 “폐기하여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물품관리관리”를 “물품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물품관리관”을 “물품관리관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를 “제23조”로, “다음의 구분”을 “다음 각 호”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하며, 제12조에 따른”을 “하며,”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사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관리책임) ① <u>시장</u>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2조(관리책임) ① <u>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생략)</p> <p>②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u>」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p> <p>1.·2. (생략)</p>	<p>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u>」 제75조 ----- -----.</p> <p>1.·2. (현행과 같음)</p>
<p>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u>」(이하 “<u>령</u>”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채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 -----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u>」(이하 “<u>령</u>” ----- ----- -----.</p> <p>② (현행과 같음)</p>

제19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3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② (생략)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생략)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생략)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비품출납

제19조(불용품의 폐기) ① -----

----- 불용품폐기(해체)조서----- 폐기하여야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물품관리관-----
-----.

④ 물품관리관은 -----

-----.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 제23조-----
- 다음 각 호-----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및 운용카드·소모품대장·도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2조
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
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
품” 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④ (생략)

<신설>

---- 하며,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
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사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
다.

관 련 법 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사천시 공고 제2022-943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된 제1종~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물에서 ‘정신병원’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1종~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물에서 ‘정신병원’을 삭제(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
- 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 확대(안 제61조)
 - 열람 → 열람 또는 사본 제공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도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Tel : 831-3166, FAX : 831-6033)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도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된 제1종~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물에서 ‘정신병원’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1종~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물에서 ‘정신병원’을 삭제(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
- 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 확대(안 제61조)
 - 열람 → 열람 또는 사본 제공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6. . ~ 2022. 7.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785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호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을” 을 “(격리병원은” 으로 한다.

제24조제4호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을” 을 “(격리병원은” 으로 한다.

제25조제4호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을” 을 “(격리병원은” 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를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제23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4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 4. (생략)</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u>격리병원을 제외한다</u>)</p> <p>6. ~ 17. (생략)</p>	<p>제23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격리병원</u>은 ----- -----</p> <p>6. ~ 17. (현행과 같음)</p>
<p>제24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 5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 3. (생략)</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u>격리병원을 제외한다</u>)</p> <p>5. ~ 16. (생략)</p>	<p>제24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격리병원</u>은 ----- -----</p> <p>5. ~ 16. (현행과 같음)</p>
<p>제25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5호 별표 6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제25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p>

<p>1. ~ 3. (생략)</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u>격리병원을 제외한다</u>)</p> <p>5. ~ 16. (생략)</p> <p>제61조(회의록) ①·② (생략)</p> <p>③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공개는 <u>열람하게 하는 방법</u>에 의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격리병원은</u> ----- -----)</p> <p>5. ~ 16. (현행과 같음)</p> <p>제61조(회의록)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u> <u>방법으로 한다.</u></p>
---	---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4. 22., 2011. 8. 4., 2015. 8. 11., 2017. 4. 18.>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2011. 7. 28.,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1. 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1. 6., 2012. 4. 10.>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 2.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 8. 6.>

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 8. 5.]